

의안번호	2219723
의 퇴 인	송재봉의원
회 답 일	2026. 7. 15.
추계번호	26B3305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0조(기금의 용도)	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함 5의2.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상데이터 분석 및 재난대응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원	의무규정

II.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70조(기금의 용도)	•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개정안은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상데이터 분석 및 재난대응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원’을 추가하는 내용임

- 현행법에 따라 기후대응기금은 정부의 출연금,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(교통·에너지·환경세의 1천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),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며¹⁾,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

1) 제69조(기후대응기금의 설치) ①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정부의 출연금
2.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
3.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
4. 제71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
5. 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·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으로부터의 차입금
6. 「공공자금관리기금법」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(豫受金)
7. 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3항에 따라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입
8. 기금을 운영하여 생긴 수익금

축, 적응 기술 개발 및 적응 역량 강화 등의 용도에 사용함²⁾

[표 1] 2026년 기후대응기금 기금운용계획안

(단위: 백만원, %)

구분	2024 결산	2025		2026 예산(B)
		예산 ¹⁾	결산	
기후대응기금	2,305,830	2,599,717	2,599,717	2,905,685

주: 1)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

자료: 기후에너지환경부, 「2025회계연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(Ⅱ-1)」

- 개정안이 시행되어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상 데이터 분석 및 재난대응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원이 추가될 경우 이와 관련된 기존 사업의 확대 또는 신규사업의 추진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라 기후대응기금을 사용하여 확대 또는 신규 추진될 사업의 내용과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재정소요의 추계가 곤란함

9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

③ 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 기관·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제71조(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)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「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」에 따른 교통·에너지·환경세의 1천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.

2) 제70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.

1.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기반 조성·운영

2.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산업·노동·지역경제 전환 및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

3.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, 적응 기술 개발 및 적응 역량 강화

4.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경제적·사회적 여건이 악화된 지역이나 피해를 받는 노동자·계층에 대한 일자리 전환·창출 지원

5.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기술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

6.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융자·투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금융지원

7.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·홍보

8.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

9.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

10. 「공공자금관리기금법」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

11. 기금의 조성·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

12.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장우윤	예승우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우윤	02-6788-3735	jangwy93@nabo.go.kr